

4 건설공사 경비분석 및 비목별 요율

I. 개요

1. 개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같은 비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를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건설공사 경비 비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직접계산방법으로는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되어지는 공사원가비목별요율을 중심으로 게재하였다.

2.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수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 2, 3항 참조)

-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격
 - ② 전문가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가 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지 등에 게재되지 아니한 계약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동법시행규칙 제5조)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며,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단,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거래실례가격(예정가격)에 이미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 ①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②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③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④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⑤ 이윤 :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곱한 금액

3)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공사에 있어서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를 활용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4)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1항~3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 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5) 기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균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거래가격 온라인상표

www.cmpi.or.kr

거래가격DB, 건설직산DB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

물가회원

- 거래가격 전체 분류, 품목조회 및 인쇄 서비스
- EMS단가관리시스템 다운로드 서비스 (연간회원)
- 품목별 가격추이 서비스 및 인쇄 서비스
- 과거자료 상세검색 서비스
- (년월별, 규격, 메이커, 페이지 등 다양한 검색인자 제공)
- 마이페이지를 통한 즐겨찾는 품목 관리

(VAT 별도)
25,000원 (1개월)
80,000원 (6개월)
120,000원 (1년)

II. 건설공사 경비분석

II-1. 산업재산권

1. 산업재산권의 정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이다.

2. 실용신안제도와 특허법과의 비교

1) 특허법과의 일치점

우리나라의 실용신안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다. 더욱이 특허법이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유사하다.

2) 특허법과 상이점

① 보호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그것은 단지 창작이면 족하고 고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② 등록요건

발명의 특허요건과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각각 산업 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 시 법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이다.

③ 권리존속기간 및 그 연장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양자 상이하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게 되어 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이 짧다는 점에 기인한다.

④ 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의 그것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싸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 부터 5년이내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술평가청구는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가능하며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⑤ 권리의 실시요건

특허법 상 특허발명의 실시라 함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특허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나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 외에,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특허방법의 사용행위뿐 아니라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더욱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어떠한 물건이 특허방법의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지 아니한 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과 동일한 물건일 때에는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실용신안은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여, 수입 또는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에만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⑥ PCT에 의한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 보면, 즉 실용신안법에서는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첨부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하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준일까지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간 내에 도면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무효로 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제출된 도면은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자진보정으로 본다.

3) 특허권의 상각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고,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최장 20년이다. 특허권의 상각방법은 정액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며,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 허	실 용 신 안	의 장	상 표
정 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소발명)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보 기	벨이 전지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타상전화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디자인	전화가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마크 등
존속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구법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관리)

II-2.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적절한 품질관리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과다한 품질관리비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내역에 현실화된 품질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향상된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1. 품질관리계획

- 1) 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①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②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③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 2) 품질관리계획 수립

(법 제24조 제2항 및 영 제40조 1항)

 - ① 시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공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 부재 포함)를 설계도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품질관리 계획 수립 제외
 - ㉠ 조경식재 공사
 - ㉡ 가설물설치 공사
 - ㉢ 철거공사

* 그러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규칙 제15조)

- 3)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영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 상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실시
 - ①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 전까지 (규칙 제20조 제1항)
 - ② 확인요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 (규칙 제20조 제 2항)
 -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 제40조

- 제2항)
- ④ 발주자가 확인을 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16조 제3항)
- ⑤ 발주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영 제40조 제4항)
- ⑥ 건설 공사의 발주 및 허가, 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법 제24조 제3항)
- ⑦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호가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 47조 제2항)
- ⑧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연도에는 발주자가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칙 제16조 제3항)
- 5)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시행규칙 제15조의4)
 - ①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발주청 또는 인, 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규칙 제15조의4 제3항)- 6)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영 제45조)
 - ①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때 발주자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준공 등의 검사자는 제출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 완공 후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시설물 인계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당해시설물의 존속기간동안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보존하여야 한다.- 7)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 ① 발주자 및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 시킬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 제1항)
 - ③ 시공자가 대행을 의뢰시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규칙 제26조 제2항)
 - ④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 통보하여야 한다.(규칙 제26조 제3항)
 - 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규칙 제18조 제2항)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6항)

2. 품질시험계획

1) 대상(영 제41조 제2항)

-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② 연면적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③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 품질시험계획수립(영 제41조 제2항)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② 품질시험계획의 내용(규칙 제15조의2)

-개요

가.공사명	나.시공자	다.현장대리인
-시험계획횟수		
가.공종	나.시험종목	다.시험계획물량
라.시험빈도	마.계획시험횟수	바.기타
-시험시설		
가.장비명	나.규격	다.단위
라.수량	마.시험실배치평면도	바.기타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성명	나.등급	다.건설공사업무수행기간
라.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마.기타	

- ③ 품질시험 계획서는 공식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43조 제1항)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1) 품질관리비는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따른다.
-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 제1항 관련)

1.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기준

- 가.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방법 및 횟수와 품질관리비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시험비합계의 10% 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 나. 품질시험은 당해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공사시방서에는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품질시

험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품질관리비사용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 (1)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장비가동시간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차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구분	상각율	수리율
모터 및 기계	0.8	0.6
계이지기계	0.8	0.6
초차류	1.0	-
금속류	0.9	0.3
계이지	1.0	0.6

- (2)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3)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100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4)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나. 기타 품질관리비

- ① 품질문서 관련비용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비,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②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 ③ 시험차량비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 ④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 ⑤ 기타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

II-3. 보험료

II-3-1. 국민건강보험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부과요소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3) 부과체계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요소를 달리 적용

①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70원(적용점수당 금액)

②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를 합산한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170원(적용점수당 금액)

4) 보험료 산정방법

①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 170원(적용점수당 금액)]

② 소득이 없거나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경제활동 등 점수 + 재산 점수

③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 점수+재산 점수

④ 부과표준소득의 기준

소득, 재산, 생활수준(재산, 자동차) 및 경제활동 참가율(성·연령)

- 소득의 범위 : 종합소득(연금소득포함), 농업소득

· 종합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100%적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20%)

· 농업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20% 적용

재산의 범위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전/월세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 / 월세금액의 30% 적용

※ 월세평가 : 월세보증금+(월세금÷0.025)

- 연령적용기준 : 매년 1월 1일기준

⑤ 장애인에 대한 특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출시 장애인 본인의 성·연령 1구간 적용

- 장애인 본인의 소유자동차 또는 장애인용 차량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비과세 자동차는 부과제외

⑥ 보험료 경감율은 산정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1)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2) 보험료 산정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율(6.07%)

① 보수월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② 보험료율

2015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6.07% (사용자 3.035%, 가입자 3.035%)

3)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보수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②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③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 자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카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과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

④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⑤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은 2004. 1. 1. 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4)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5) 보수총액의 신고

① 신고의무자 : 사용자(공무원, 교직원)는 기관장)

② 신고기한 : 근로자 및 법인사업장의 대표자는 매년 2월말,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매년6월10일까지

6)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

①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 근무자이므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함(이러한 경우 신청절차를 통해 분할납부 가능)

③ 무보수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복직 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다른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④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 7)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의 보험료 부과. 보수 과년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과 기준 고시
 - ①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 : 신고금액(신고금액이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최고등급 근로자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 ② 선원 : 단체협약상의 보수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다만,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수액에서 아래와 같이 직책별로 일정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
 - 선장, 기관장 : 1.6
 - 통신장, 항기사, 갑조장 : 1.4
 - 일반선원, 1갑원 : 1.2
 - ③ 기타 : 13등급, 1,000,000원

II-3-2. 국민연금보험

1. 연금보험료납부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업장 가입장

① 당연가입사업장

종전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인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 전문직 종사업종 사업장 : 의약품 및 의료용품(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를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함.

※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및 시간제 근로자)도 지역가입자로 개별가입을 했던 종전과 달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함.

※ 당연적용사업장 단계적 확대계획

- 2003. 7. 1부터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인 및 전문직종(1단계)
- 2004. 7. 1부터 : 1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 2003. 7. 1. 현재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2단계)
- 2006. 1. 1부터 : 1, 2단계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3단계)

②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금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 날 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최초 상실일이 속한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17조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월단위로 계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료 납부요율

사업장 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 표준소득월액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보수
-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 소득 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④ 연금보험료 부담방식

'99년 4월분부터 퇴직금전환금 제도가 폐지되고 노·사간 각각 4.5%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는 종전 6% 부담에서 4.5%로 부담이 경감되었고, 사용자는 종전 3%에서 4.5%로 부담이 늘었으나, 매월 납부시 자금운용측면에서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지역가입자

①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연금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 날이 속한 달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달에 취득일과 상실일이 속한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1년마다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9%까지 점차 상향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연금지급

국민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사망으로 인하여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데, 이에는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법 제63조 및 법 제 68, 73조)

1) 노령연금 :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2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된다. 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납입자나 55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중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아 법에 정해진 비율의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법 제63조)

- 2) 장애연금 :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된다.(법 제68조)
 - ①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100%+가급연금액
 - ②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80%+가급연금액
 - ③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60%+가급연금액
 - ④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3)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夫인 경우는 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법 제73조)
- 4)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노령, 장애, 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다. (법 제77조)
- 5)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9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법 제80조)
- 6) 심사청구 :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 스스로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절차를 말한다.(법 제108조)

II-3-3.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적용요율

2. 요율표는 [별표] 참고 (41면 참조 바람.)

3.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물·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적용제외 사업)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4) 가사서비스업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주1)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정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주2)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4.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1) 보험료의 산정방법

-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에 동종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보수총액×보험요율]
- 보수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산정

[보험료=총공사금액(총별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요율]

※ 201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 일반건설업공사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7%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하도급 공사금액의 31%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 위의 노무비율은 공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노무 비율에 준한다. 그리고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보수가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보수로 결정한다.

※ 2015년도 건설업 보험요율 : 1,000분의 38

※ 2015년도 별목업 노무비율

- 별목재적량 1㎡당 10,610원

2) 신고·납부

① 사업주(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③ ①의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②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보수총액의 산정

① 보수 :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보수·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②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보수

- 원칙적으로 평균보수 산정시의 보수범위와 유사[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보수 산정지침(2002.1.22 개정)의 “보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보수”을 기준으로 판단

-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보수는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 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보수는 포함되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5. 보험요율의 결정

1) 개요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보험요율(매년 12월 31일 고시)을 적용함.

2) 적용

- ①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 ②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 적용순위

-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 위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정됨.

6. 개별실적요율(보험요율결정의 특례)

1) 개별실적요율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재해예방의 노력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 다음 보험연도의 요율로 하는 제도

2) 적용범위

- 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③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주된 작업상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3) 산정방법

- ※ 개별실적요율 = 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 보험료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 보험급여액 : 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산재보험 요율표

(적용기간 : 2015. 1. 1~2015. 12. 31, 단위 : 천분율)

[별표]			
적 용 사 업 구 분	보 험 요 율	적 용 사 업 구 분	보 험 요 율
1. 광업		수제품 제조업	16
석탄광업	340	기타 제조업	29
금속 및 비금속광업	84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채 석 업	338	4. 건 설 업	38
석회석광업	83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광업	69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2. 제조업		여객자동차운수업	19
식료품제조업	19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5
담배제조업	8	화물자동차운수업	6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6	항공운수업	8
펌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인쇄물 가공업		창 고 업	14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12	통 신 업	12
화학제품 제조업	17	6. 임 업	89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3	어업	162
고무제품 제조업	2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25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0	8. 농 업	27
유리 제조업	15	9. 기타의 사업	
시멘트 제조업	2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3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또는 금속가공업		기타의 각종사업	10
금속제련업	10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금속재료품 제조업	3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도금업	19	교육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9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자제품 제조업	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
선박 건조 및 수리업	2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9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16	0. 금융 및 보험업	7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	* 해외파견자: 17/100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9		

II-3-4. 고용보험

1. 건설공사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제외 사업장

- ①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 법 제 15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④ ①~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다.

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3. 건설업 월평균 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1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3,157,765원으로 한다.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406호, 2014. 12. 19)

4. 보험요율 산정기준

(사용자 :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각 보험요율 합계액)

구 분		보험요율	부 담	비 고
실 업 급 여		1.10%	사업주 1/2, 근로자 1/2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25%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 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65%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	

5. 조달청 적용기준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87억원 이상인자.

2)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87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등록내용-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5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	1700억원~700억원	1300억원~700억원	600억원~500억원	6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3	700억원~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7	130억원~87억원	130억원~87억원	130억원~87억원
4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II-3-5. 임금채권보장보험

1. 보수채권보장제도의 의미

보수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보수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수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보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도입취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보수채권보장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일정범위의 보수 및 퇴직금을 여타의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수채권우선변제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실효성이 미비하여, 이에 정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1998. 7. 1.부터 보수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1) 적용범위

산재보험과 같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수채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적용대상

보수채권보장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은 보수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다만,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지 않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등에 한해 적용이 제외되나, 적용제외사업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거나 산재보험 적용 사업이 었다가 적용제외사업으로 되어 의제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보수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수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재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신고에 의해 보수채권보장관계가 당연히 성립 및 소멸하게 되므로 산재보험과 별도로 보수채권보장관계 성립 및 소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2000. 7. 1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적용

4. 부담금 신고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자동적으로 보수채권에도 자동가입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없다. 노동부장관은 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000분의 2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부담금비율은 노동부장관이 보수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당해 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함께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하면 된다. 산재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매년도 3월 31일까지 그 1년간에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 총액 추정액에 부담금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였다가 다음년도 초 70일 이내에 지난해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보수 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부담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5. 사업자부담금

사업자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하므로 보수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소속 근로자 보수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된다.

1) 사업자부담금 비율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1000분의 0.8 범위 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보수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2001년 : 0.5/1000, 2002년 : 0.5/1000, 2003년 : 0.3/1000

※ 2004년 : 0.3/1000, 2005년 : 0.4/1000, 2006년 : 0.4/1000

2) 사업자부담금 경감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자부담금 경감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262호, 2014.1.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25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보장되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산식〉

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②~③ 퇴직연금제도 설정 등(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가입,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신탁 가입)을 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평균근속연수×(1-퇴직금적립비율))]/3년
- 주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 주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3) 부담금 산정 및 납부절차

사업주 부담금 산정 및 납부절차는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절차와 동일하다. 즉, 사업주는 매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그 해 1년동안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납부하였다가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 보수 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중에 보수채권보장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수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부담금)을 신고·납부(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일 종료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보수채권보장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계연도에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보수 총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등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증가개산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보험사무조합등 산재보험 적용·징수관련 제반사항은 보수채권보장제도의 적용·징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개산부담금

보험연도마다 3월 31일까지(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부담금은 1년간(또는 유기사업기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 보수총액×부담금비율로 산정한다.

② 확정부담금

보험연도(정산할 개산부담금을 신고한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산재보험료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부담금은(실제 지급한 보수총액×부담금비율-기납부 개산부담금)으로 산정한다.

※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다음 연도 개산부담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해 준다.

③ 연체금

개산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초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다만,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

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④ 가산금

확정부담금의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하여 기납부한 개산부담금이 확정부담금에 부족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징수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6. 체당금 지급

체당금이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체당금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다.

1) 체당금 지급 사유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기업의 도산이며, 보수채권보장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도산에는 파산법등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하는 사실상의 도산이 있다.

① 재판상 도산은 사업주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을 받았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② 사실상 도산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보수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1명의 신청에 의해 지방 노동관서장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하게 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한다.

※ 사실상 도산 인정대상사업주 :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

2) 체당금 지급액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보수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수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보수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이다.

①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체불퇴직금은 보수채권의 보장범위에서 제외한다.

②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함께 보장의 형평성을 위해 지급이 보장되는 보수채권에 대해서도 개별 근로자의 보수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원정상한액(보수의 각 1월분 및 퇴직금의 각 1년분)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1~4인 사업장은 51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한다.

II-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적용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4. 10.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7호)
2. 적용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3. 안전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직접노무비
 -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요율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요율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이다.
 - 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관급포함 안전관리비)≤(관급제외 안전관리비×1.2)
 - 4)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 5)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6)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가.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미만		50억원이상
		5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	2.10%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	1.27%

주)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정보공사,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 ※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 제1항 제1호 관련)
 -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 1)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가)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 다)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제7조 제1항 제2호 관련)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 ※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 4)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5)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1)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 경계웬스, PE드럼 등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1)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동근톱의 톱날접촉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플러그 등

2)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등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3)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제7조제1항제4호 관련) 다른 법 적용 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제7조 제1항 제5호 관련)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당해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자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1)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3)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신문(안전관련 신문 등 전문지를 포함한다) 구독 비용

2)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3)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1)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2)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비용 등을 말한다)

3)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4)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근로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 1)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 분진·유해물질사용·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용은 사용 가능
- 3)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식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 4)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 5)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나. 건설업과 관련 없는 파상풍, 독감 등의 예방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내용 없음.

8. 본사 사용비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가. 본사에 제7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주)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마.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용 예시
일반건설공사(갑)	<p>□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건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p> <p>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移築)하는 공사 (5)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6) 건축물 설비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건축물 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선기 등의 설비공사 2) 해당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3) 해당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4) 해당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5) 해당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 조절 등의 설비공사 6) 해당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7) 해당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8) 해당 건축물 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9) 건축물 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10) 그 밖의 건축물의 설비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내장, 유리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7) 교량건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나)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다) 선창의 건설공사 나. 도로신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가)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나)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다)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한다) 다. 기타 건설공사 (1)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가)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나)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다) 기설의 도로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 공사 (라)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마)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바) 기설도로 또는 플랫폼 등의 포장공사(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은 포함한다) (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아)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자) 지반으로부터 10m 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차) 하천의 연제(연제: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카) 관개용수로, 그 밖의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타)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파)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하)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거)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니)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더)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러)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머)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를 포함한다) (버)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환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서)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어) 수중요물 수거작업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저)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한다) (치)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키)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티)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피)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히)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고)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노) 용광로의 건설공사 (도)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로)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모) 신호기의 건설공사 (보) 하수도관 세척공사 (소)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조)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일반건설 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 기계장치공사 (1)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가)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다)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라)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마)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바) 삭도 건설공사 (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아)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자) 그 밖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차)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카)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타)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다만 산세정공사는 제외한다) (파)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하)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거)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p>□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p> <p>가.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p> <p>(1)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밀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p> <p>(가)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p> <p>(나) 제방의 신설 공사장 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를 말한다),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p> <p>(다)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p> <p>(라)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p> <p>(마)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p> <p>(바)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p> <p>(사)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p> <p>(아)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p> <p>(자)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소,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p> <p>(차)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안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p> <p>나.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p> <p>(1)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공사</p> <p>(가)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p> <p>(나)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p> <p>(다)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p> <p>(라)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p>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p>(마)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p> <p>(바)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소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p> <p>(사)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컨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p> <p>(아)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계용수 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p> <p>(자)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소,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p> <p>(차) 그 밖의 삭도건설공사</p> <p>다. 터널신설공사</p> <p>(1) 터널 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p> <p>(가)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바위지역을 말한다)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p> <p>(나) 터널신설공사 현장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p> <p>(2)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p> <p>(3)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장에서 행하는 건설공사</p>
4.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p>□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p> <p>가.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p> <p>(1)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한다)</p> <p>(가)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p> <p>(나)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p> <p>※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p>
5.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p>□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p> <p>(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를 포함한다), 포장공사</p> <p>(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p> <p>(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p>

II-5. 폐기물처리비

1.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예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①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페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된다.

②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폐알칼리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20종의 폐기물을 말한다.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③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과 동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된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1)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수집·운반비 :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중간처리비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③ 최종처리비 :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 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 기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

건설현장 폐기물 발생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페벽돌 ·페블럭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 가지 등 임목폐기물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굴착공사 ·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페타일 및 페도자기 ·페보드류 ·폐관널 ·건설페도석(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흙 · 모래 ·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 ·혼합폐기물(제1호부터 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
	지정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페락카 ·기타
	사업장 일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 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1)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 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다.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건설폐기물은 페토사, 페벽돌,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페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서식2에 따른 수집, 운반증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 조치한다.

3)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대수 등

을 확인한 후에 위탁한다.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 등과 각각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한다.

4)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 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및 운반비

1)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①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사)한국건설자원협회 제공 (단위 : 원/톤)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철거공사	페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콘크리트	18,065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19,401

② 재건축·재개발 공사

배출지	품명	적용범위	적용단가
재건축·재개발공사 (주택·아파트등철거·해체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페콘크리트, 페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관물질이 혼합 배출된 상태	27,351
	건설오니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중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 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 가능한 상태	34,297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페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41,023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 페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76,950
	그 밖의 건설폐기물(페보드류, 페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82,920	

[해설] ① 본 처리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57호(2014.1.10))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

② 동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가(유류대 1,548원/ℓ, '14.06 조사), 노임, 원부자재, 수리수선비,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4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한 결과임.

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④ 처리대상폐기물의 규격이 80×80cm 이상으로서 별도의 소할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11장 대형브레이커」 소할품 등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이 필요함.

⑤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순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단가가 아님.

⑥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 '페콘크리트' 또는 '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안 되며, 동 처리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됨(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함).

⑦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차감한 단가임.

⑧ 2011년도 상반기('11.1~'11.6)에 발표한 단가의 경우 기존의 원가계산 산출방법과 상이함. 따라서, 계약법령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ESC 또는 DSC)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별도로 재산정하여 적용해야 함.

※ 본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71호, '12.10.29) 중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임[관련규정 : Ⅲ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의 발수 및 위·수탁 계약 등 - 1.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처리비(예정가격) 결정 - (3)호]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1m³ 또는 1ton당 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제공 (단위 : 원)

구분			30km 이하	35km	40km	50km	60km	비 고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대상폐 기물	중량기준 (1ton)	상차비	1,820	1,820	1,820	1,820	1,820	대당 15톤
		운반비	11,840	13,340	14,940	18,064	21,062	"
		계	13,660	15,160	16,760	19,884	22,882	"
	적재 부피기준(1m ³)	상차비	2,907	2,907	2,907	2,907	2,907	대당 9.39m ³
		운반비	18,914	21,310	23,866	28,857	33,646	파쇄후
		계	21,821	24,217	26,773	31,764	36,553	적재부피기준
구조물 부피기준(1m ³)	상차비	4,186	4,186	4,186	4,186	4,186	대당 15톤	
	운반비	27,232	30,682	34,362	41,547	48,443	파쇄전	
	계	31,418	34,868	38,548	45,733	52,629	구조물부피기준	
15톤 덤프트럭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중량기준 (1ton)	상차비	3,005	3,005	3,005	3,005	3,005	대당 6.3톤
		운반비	61,451	67,365	73,034	85,691	97,120	"
		계	64,456	70,371	73,039	88,696	100,125	"
	부피기준 (1m ³)	상차비	1,893	1,893	1,893	1,893	1,893	대당 10m ³
		운반비	38,714	42,440	46,012	53,985	61,186	"
		계	40,608	44,333	47,905	55,879	63,079	"
16톤 암롤트럭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중량기준 (1ton)	상차비	3,005	3,005	3,005	3,005	3,005	대당 12.6톤
		운반비	41,942	45,416	48,983	55,550	63,085	"
		계	44,947	48,151	51,988	58,555	66,090	"
	부피기준 (1m ³)	상차비	1,893	1,893	1,893	1,893	1,893	대당 20m ³
		운반비	26,423	28,442	30,859	34,997	39,744	"
		계	28,316	30,335	32,752	36,890	41,637	"

[해설] ① 상차 단가는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임.
 ②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적재부피의 비중은 흐트러진 상태로서 1.6톤/m³, 구조물부피의 비중은 파쇄전상태로서 2.3톤/m³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의 경우 비중은 0.63톤/m³을 기준으로 하였다.
 ③ 운반 차량은 15톤 덤프트럭(적재함 용량 10m³), 16톤 암롤트럭(적재함 용량 20m³)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⑤ 매립지 반입료 산출은 중량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톤)+반입료전액(톤), 부피기준일 경우에는 수집운반비(m³)+[반입료전액(톤)×비중(0.63톤/m³)]
 ⑥ 상차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0km이하는 30km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⑦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의하여 산정함. (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와 60km사이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예시) 중간처리대상폐기물 60km이상 km당 단가: [21,062(60km운반비)-18,064(50km운반비)]÷10km=300원-70km 중간처리대상폐기물의 운반비는 21,062(60km운반비)+300×10km=24,062원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고시 제2012-254호, 2013. 1. 4시행)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자 (단위 : 원 /톤)

폐기물의 종류	처 리 단 가
-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271,000
-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526,000
- 폐페인트 및 페락카	305,000
- 폐녹유, 폐유독물, 폐석면	526,000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일 함유 폐기물	804,000
- 폐산, 폐알칼리	297,000
- 폐광채(지정폐기물)	146,000
-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266,000
-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67,000
-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98,000
- 건설폐기물	23,000
- 감염성 폐기물	773,000

②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 전문) (단위 : 원 /톤)

폐기물의 종류	처 리 단 가
- 동물성잔재물	205,000
- 식물성잔재물	149,000
- 폐유기용제(할로겐족)	274,000
- 폐유기용제(기 타)	126,000
- 폐유용유	45,000
- 폐축산지	13,000
- 폐드럼 (원/개)	200
- 폐산, 폐알칼리	185,000
- 무기성 폐수처리오니	25,000
-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49,000
- 폐유리, 폐복제중 톱밥	21,000
- 폐천선지	156,000
- 폐오일필터	25,000
- 페타이어	65,000
- 폐플라스틱용기	32,000
- 폐구조물, 폐집토, 폐주물사	39,000
- 폐페인트	208,000
- 광채(일 반)	67,000
- 광채(지 정)	100,000
- 유진(일 반)	67,000
- 유진(지 정)	98,000
- 폐합성수지	205,000
- 폐합성수지	40,000
- 폐식용유	22,000
- 폐아연	27,000
- 폐유(예:활용가 혼합된 경우 포함)	174,000
- 소각잔재물, 연소재(일 반)	67,000
- 소각잔재물, 연소재(지 정)	98,000

③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단위 : 원 /톤)

폐기물의 종류	처 리 단 가
- 폐유(폐식용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13,000
- 폐종배	18,000
- 폐합성수지(단일품목)	35,000
- 폐합성수지(혼합품목)	170,000
- 폐합성고무	83,000
- 폐합성수지	10,000
- 폐합성수지	20,000
- 폐합성수지	50,000
- 폐합성수지	50,000
- 폐타이어	42,000
- 폐주물사, 폐사	25,000
- 소각잔재물, 연소재	50,000
- 폐유수지, 폐복제중, 무기성오니	16,000
- 유기성오니	84,000
- 폐합성수지	14,000
- 폐합성수지	73,000
- 폐합성수지	17,000
- 폐합성수지	138,000
- 폐합성수지	86,000
- 폐합성수지	21,000
- 폐합성수지	112,000
- 폐합성수지	639,000
- 폐합성수지	122,000

④ 폐기물처리 신고자 (단위 : 원 /톤)

폐기물의 종류	처 리 단 가
음식물류 폐기물	112,000
동물성 잔재물	138,000
식물성 잔재물	86,000
유기성 오니	84,000
폐지, 고철, 폐포장재	-

비 고)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환경부고시 제2012-163호, 2012. 8. 16)

1) 지정폐기물 종류별 반입수수료

(단위 : 원 /톤)

처리시설	폐기물 종류	구 분	분류번호	반입수수료	
소각시설	폐 유	발열량 3,000kcal/kg 미만	가- 1	113,600	
		발열량 3,000kcal/kg 이상 ~ 5,000kcal/kg 미만	가- 2	100,000	
		발열량 5,000kcal/kg 이상 ~ 7,000kcal/kg 미만	가- 3	92,000	
		고 상	가- 4	150,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 5	250,000
		비할로겐족	발열량 3,000kcal/kg 미만	가- 6	113,600
			발열량 3,000kcal/kg 이상 ~ 5,000kcal/kg 미만	가- 7	100,000
	폐 합 성 고 분 자 화 합 물	폐합성수지		가- 9	230,000
		폐합성고무		가-10	230,000
		페페인트 및 페락카		가-11	260,900
	PCB 함 유 폐 기 물	PCB농도 50%이상		가-12	28,232,100
		PCB농도 30%이상~50%미만		가-13	18,617,100
		PCB농도 20%이상~30%미만		가-14	13,640,100
		PCB농도 10%이상~20%미만		가-15	8,964,100
		PCB농도 10%미만		가-16	2,595,100
	폐 농 약(액 상)	발열량 3,000kcal/kg 미만		가-17	677,100
		발열량 3,000kcal/kg 이상 ~ 5,000kcal/kg 미만		가-18	643,100
		발열량 5,000kcal/kg 이상 ~ 7,000kcal/kg 미만		가-19	627,100
		발열량 7,000kcal/kg 이상		가-20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가-21	140,000
매립시설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재 및 흡수재, 오니류	직접매립	나- 1	65,410 ~85,400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석면	비중 0.8 이상	나- 2	68,480 ~89,400	
		비중 0.6 이상~0.8 미만	나- 3	77,210 ~100,800	
		비중 0.6 미만	나- 4	92,910 ~121,30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나- 5	65,410 ~85,400	

2) 폐기물 종류별 운반비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성상	운반차종	구 분	비 중	운 반 비
폐산, 폐알카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폐페인트 등	액상	탱크로리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1	17,800 237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톨유, PCB함유폐기물	고상	압롤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1	20,500 176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락카	고상	압롤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8 이상	22,700 196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 이상 ~0.8 미만	29,200 251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10km)	0.6 미만	40,900 352

-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사한 지정폐기물의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 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거래가격 에서는 어떤 '물가데이터' 라도 '쉽고빠르게' 찾을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홈페이지
온라인 서비스 안내**

www.cmpi.or.kr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

- 물가회원(거래가격)
 - 25,000원(1개월, VAT별도)
 - 80,000원(6개월, VAT별도)
 - 120,000원(1년, VAT별도)
- 통합회원(거래가격+건설적산)
 - 150,000원(1년, VAT별도)
- 결합상품A(통합회원+거래가격 정기구독)
 - 정상가 > 350,000원
 - 할인가 : 270,000원 (VAT별도)
- 결합상품B(통합회원+정기구독+건설적산(2014년 신개정판))
 - 정상가 > 420,000원
 - 할인가 : 300,000원 (VAT별도)

II-6. 환경관리비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frac{(\text{상각률} + \text{수리율}) \times \text{설비가격}}{\text{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설비가동시간}$$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 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차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 (1) 도로 : 0.9% 이상
- (2) 플랜트 : 0.4% 이상
- (3) 지하철 : 0.5% 이상
- (4) 철도 : 1.5% 이상
- (5) 상하수도 : 0.5% 이상
-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타방지막 또는 준설도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7) 댐 : 1.1% 이상
- (8) 택지개발 : 0.6% 이상
-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 (10) 주택(신축) : 0.3% 이상
-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 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 (4) 수질오염,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타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1)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폐기물의 성상·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3. 기타

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삭제

II-7. 퇴직공제부금비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9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제제도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하여, 공제부금을 납부(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해당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주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

※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이므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3. 퇴직공제의 가입단위와 시기

- 1) 가입단위 : 사업장별 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가입
- 2) 퇴직공제 가입 시기 및 납부기한
 - 의무가입대상공사 : 건설공사의 개시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
 - 임의가입대상공사 : 수시
- 3)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제가입 등 의무불이행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부과권자 :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

4. 공제제도 가입사업주에 대한 지원사항

- 의무가입대상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공사원가 또는 분양가원가에 반영됨.
- 임의가입대상공사에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시공능력평가시 우대되어 공사수주에 유리
- 기술능력평가액에 (퇴직공제불입금×10)가산

5.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1)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포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이 공사
 -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2) 임의가입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의무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사업주가 건설관계법령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이면, 원·하수급인 누구나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

6. 가입소요비용(공제부금)의 부담주체

- 1) 의무가입대상공사
 -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가에 반영(공공 건설발주자 또는 임주자가 부담)
- 2) 임의가입공사
 - 사업주 부담(고용보험에서 1/3을 지원)
 - ※ 조달청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원가산정기준 [2008. 1. 14일 이후 입찰일기준]
 - 직접노무비 × 2.30% (건축), 2.30%(토목)
 -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 공사원가계산서 상 경비항목에 계상

7. 공제부금의 납부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로 할지라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건설 공사는 4,100원 적용 (공제부금액 인상 내용 2006. 5. 9 노동부장관 승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 1. 1부터 3천원으로, 2008. 1. 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8. 퇴직공제금의 산정

- 근로자 월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일 근무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부금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함.
-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 수 누계 × 2,100원(2006. 12. 31 이전 착공공사)
-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 수 누계 × 3,100원(2007. 1. 1 이후 착공공사)
- 금월 납부할 공제부금액 = 전월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 수 누계 × 4,100원(2008. 1. 1 이후 착공공사)

9. 퇴직공제제도의 업무처리절차 개요

-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개시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1부를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FAX, 우편, 방문)(의무가입대상공사 하수급인 경우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별도 가입 가능)
- 『공제부금』 납부
-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
- 『퇴직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한 임시근로자 포함)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퇴직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 1부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반드시 EDI(공제회 홈페이지(www.kwcmf.or.kr) 공제업무 EDI프로그램)신고, 불가피한 경우 FAX 등 가능)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 공제가입 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교부(또는 사업주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받은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 『퇴직공제금』 지급
- 일용근로자가 자영업, 정규직 전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방문, 우편)

III. 비목별 요율

1. 건설공사 종류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 22)

공사종류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비율(Y)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일반건설공사(을)		2.66	1.99%	5,499,000원
중건설공사		3.09	2.35%	5,400,000원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해설]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간접노무비율

[공무원가 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 2014. 1. 10, 일부개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동비율의 당해 계약목적의 규모, 내용, 공종, 기간 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구	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5
공사규모별 (품셈에 의하여 산출되는 공무원가 기준)	5억원 미만	14
	5~30억원 미만	15
	30억원 이상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해설] 예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15%+17%+14.5%)÷3=15.5%

3.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

[표 ①] 일반관리비율

업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시설공사	6

[표 ②]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 미만	6.0	5천만원 미만	6.0
5억원~30억원미만	5.5	5천만원~3억원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 이상	5.0

[해설] 일반관리비는 [표 ①]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표 ②]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4.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구	분	이윤율	구	분	이윤율
공	사	15	용	역	10
제	조·구	25	수	입	10
매			물	품	
			의	구	
			입		

(참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위 표의 요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